

부산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0가단3295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6331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0가단329555 판결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 2021. 7. 20.

판 결 선 고 2021. 9. 7.

주 문

1. 가.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9. 5. 13.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위 주식을 D에게 양도하고, 주식회사 E에 그 주식양도를 통지하라.

2. 가. D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9. 5. 13.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위 주식을 D에게 양도하고, 주식회사 E에 그 주식양도를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원인의 내용에 비추어 원상회복으로 주식양도를 구하고 있고, 이를 전제로 그 양도통지를 구하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택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7. 12. 20.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E'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E에게 투자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D은 주식회사 E의 당시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E과 D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투자금을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지정한 전용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이 사건 투자계약을 위반하였다.

이에 원고는 D과 주식회사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8차전5004호로 이 사건 투자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위 투자금 1억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23. 'D은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989,74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11. 10. 확정되었다.

2) 원고는 D과 주식회사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9998호로 2017. 2. 15.자 투자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같은 법원

2018머110555호로 조정예 회부되었다. 위 조정절차에서 원고와 D, 주식회사 E 사이에 ‘D과 주식회사 E은 연대하여 2019. 4. 30.까지 원고에게 54,2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연대하여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2018. 12. 20.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D의 주식양도

D은 2019. 5. 13. 피고 B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주식 25,000주를 피고 B에게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D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주식 15,000주를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하고,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D의 자력상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D은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는 강원 평창군 F 호텔 G호에 대한 공유지분, 강원 정선군 H 지상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가.항 기재 원리금채권과 경남 엔젤투자매칭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 I 주식회사에 대한 2억 원이 넘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5호증의 2, 제18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이전에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및 이 사건 조정에 따른 각 원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각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D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주식이 D의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이 피고들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D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D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주식회사 E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D에 대한 기망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고, 이미 원고가 주식회사 E에 투자하였던 돈은 모두 회수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들은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던 주식회사 E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와 D 사이의 이해관계나 D의 재산상태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진

[별지1]

목적물 기본정보

파고1 이 채무자 으로부터 양수한 다음의 주식

1. 회사명 :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2. 주식 1주의 금액 : 보통주식 금5,000원, 상환전환우선주식 금5,000원
3.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38,000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4,420주
4. 주식소유자 :
5. 주식의 총수: 주식회사 발행 주식 총수 52,420주 중 채무자 이 소유 후 양도한 주식 25,000주 (보통주식 23,000주, 상환전환우선 주식 2,000주)

[별지2]

목적물 기본정보

피고2 (☞) 이 채무자 으로부터 양수한 다음의 주식

1. 회사명 :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2. 주식 1주의 금액 : 보통주식 금5,000원, 상환전환우선주식 금5,000원
3.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38,000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4,420주
4. 주식소유자 : (☞)
5. 주식의 총수: 주식회사 발행 주식 총수 52,420주 중 채무자 이 소유 후 양도한 주식 15,000주 (보통주식 15,000주)

